

산업단지 [] 개발사업
[] 재생사업 준공인가 신청서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30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사업시행자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)
	업체명(법인명)	전화번호
	주소 또는 소재지	

신청 내용

사업명칭					사업위치			
사업면적	㎡				시행기간			
토지이용계획 (㎡)	용도별							
	면적							
기반시설계획	시설별							
	개요							

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7조제1항(제39조의10제1항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·제2항(제44조의9제1항)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
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준공설계도서(준공사진을 포함합니다) 2.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38조에 따른 개발토지·시설등의 처분계획서 4.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등의 귀속조서와 도면(법 제1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 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「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합니다. 다만,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설치비가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등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) 5. 환지계획서 및 신·구지적대조도(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 6.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46조·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내역서(공유수면매립을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)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